

# **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**

## **전부개정 조례안**

## **심 사 보 고 서**

2019년 8월 28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# **1. 심사경과**

가. 제안일자: 2019년 8월 7일

나. 제안자: 이종숙 의원 외 12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8. 28.)

### **2. 제안설명 요지**

(제안설명: 이종숙 의원)

#### **가. 제안이유**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물 사용승인 전 지도와 사용승인 후 점검을 통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 나. 주요내용

- 1)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”로 조례 제명 변경
- 2)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3)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- 4) 점검의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 신설 (안 제7조)
- 5)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내용반영에 대한 사항 (안 제8조)
- 6) 시정명령 등의 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 신설  
(안 제11조~1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

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장애인복지과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19. 8. 21. ~ 8. 26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전문 및 관계법령: 붙임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## 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공 전 · 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

## 나. 주요 내용

- 1)[안 제1~2조] 상위법 명시 및 용어 정의
- 2)[안 제3조] 구청장의 책무
  -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, 시설주,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
  - 점검요원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
  -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여부 점검 등
- 3)[안 제4조] 관계 공무원의 의무
  -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안내 후 점검에 협조토록 지도 · 감독
  - 원활한 점검진행을 위해 점검요원에게 사전통보
- 4)[안 제7조] 점검시기 등
  - 사전점검: 사용승인 전 실시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
  - 사후점검: 시설물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 실시
- 5)[안 제8조]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
  -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
  -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간연장 사유서 제출

- 점검결과 반영을 위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, 자료요구

#### 6)[안 제10조] 적용의 완화

-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·노인·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
- 적용완화 결과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지

#### 7)[안 제11조~제12조] 시정명령 등, 이행강제금

- 점검 후 불이행시 법에 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
-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 완공후 사후점검 실시, 점검시기,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 이용 및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 임
- 우리구는 전국에서 장애우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, 어르신 인구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설치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있는바, 기존 조례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으로 제한하여 사용승인 후 구조·내용변경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사후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## 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제7조(대상시설)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"대상시설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공원
2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3. 공동주택
4. 통신시설
5.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제9조의2(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)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(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)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**제10조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·감독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실태조사)**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 ·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5조(적용의 완화)**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(이하 이 조에서 "세부기준"이라 한다)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
2.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**제23조(시정명령 등)**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·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·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24조(이행강제금)**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이행강제금의 금액
2. 부과 사유
3. 납부기한
4. 수납기관
5. 이의 제기 방법
6. 이의 제기 기관

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## 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7조(적용의 완화)**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

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·노인·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 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시정명령)**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2조의2(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)**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

경우 :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
2.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: 「지방세법」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
  3.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: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
  4.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 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  5.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: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-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,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.
-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